##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선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023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7.

발 의 자: 강선영·성일종·고동진

김상훈 • 김종양 • 서명옥

유용원 • 배준영 • 박준태

최수진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4급부터 7급까지로 판정된 사람 등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진료기록이나치료내역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있으며, 확인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병역처분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에는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할 때 관계 기관에 대하여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 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는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,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, 학교의 장 등에게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·치료 관련 기록 내역,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77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등).

##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,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등에 대하여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·치료 관련 기록 내역,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,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심사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있다.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요구에 따라야 한다.
-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취득한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보·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확인 신체검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		개 정 안
제77조의2(확인신체검사	<u> </u>	1	제77조의2(확인신체검사 등) ①
	6)	1)	
(생략)			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		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
			른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
			<u>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</u>
			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			경우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
			기관의 장, 「국민건강보험법」
			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
			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
			학교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
			등에 대하여 확인신체검사 대
			상자의 진료기록·치료 관련
			기록 내역, 학교생활기록부 및
			학생건강기록부, 병역처분변경
			심사위원회 심사자료 등의 제
			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
			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
			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
			따라야 한다.
<신 설>			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취
<u> </u>			득한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에

대한 정보·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 공하는 등 확인신체검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②·③ (생 략) ④·⑤ (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)